

앞에서 상술한 바 있다.

10. 전망

가. 본 위원회의 일차적 목표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뒤따른다. 그리고 궁극 목표는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이를 억압한 국가권력의 행태를 정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에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과거 공권력의 위법한 행태, 사망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의 접근이야말로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 과거 잘못을 행한 공권력이나 민주화 운동 세력 어느 쪽에서든 그들이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는 희망'에 이끌려 진상 규명에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어느 편에서든 잘되었으면 잘된 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진상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만이 이를 토대로 제대로 사람과 제도를 평가하고 또 제대로 된 민주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원회는 그 구성과 활동방식에 있어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시도이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억압했던 공권력에 소속되어 있는 파견공무원과 이에 항거하는 측에 섰던 민간출신 자문위원들이 각기 특장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지를 과거 청산이라는 한 목표 아래 얼마나 잘 결합할 수 있느냐는 본 위원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나아가 길게는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과거의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데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제보없이는 새로운 사실을 얻어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의 목적이 진상규명을 통한 민주발전에 있으므로 구체적 사인이나 공권력 행사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제도, 관행, 법 등의 잘못을 밝혀 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이고 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입법론으로는 명예회복법에서 과거 역사를 정리 평가하는 과제를 설정했어야 마땅하다. 의문

사법은 죽음과 관계된 사건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원회로서는 개개 사안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그 배경이 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대한 항거로서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대한 몇 가지 의문

조용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서론

II. 의문사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범위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위원회의 조사권

III. 의문사법의 문제점

1. 기초적 문제 : 일관성과 완결성 부족
2. 조사를 위한 적절한 기능과 권한
3. 과거청산의 방향과 원칙에 관한 문제의식

IV. 맺는 말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¹²⁾(이하 “의문사법”)의 문제의식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 글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과 법 제정을 위해 무려 422일간 계속된 유가족들의 농성이 가진 의미를 조금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당위성과 유가족들의 한과 열망을 민주화 이행 과정을 촉진하고 또한 공고하게 만들어 “인권보호체제(rights-protective regime)를 제도화”¹³⁾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망과

12) 의문사진상규명에관 특별법, 2000년 1월 15일, 법률 제6170호. 이 법의 시행령은 2000. 7. 10. 대통령령 16898호로 제정공포되었다.

13) Jack Donne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146쪽.

전략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때이다. 다시 말하면 의문사법은 문제의식에서부터 그 역사적 의미에 깊이 못하는 것은 물론, 그 법이 현실에서 의도하는 구체적인 결과의 실현조차 낙관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할 때이다. 이 법의 부실함은 이 법에 담긴 조항들 스스로가 서로간에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나는 의문사위원회의 능동적인 활동에 힘입어 그 중 많은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해결문제와 이에 바탕을 둔 실질적 민주화와 인권보장의 과제에 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과 역량의 수준을 반성적으로 돌아켜봄으로써, 다음 단계의 발전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할 때이다.

II. 의문사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범위

이 법이 내세우는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의문사”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동어반복적인 법의 정의에 따르면 “의문사”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¹⁴⁾ 이 법이 진상을

14) 이 정의규정을 “동어반복”이라고 보는 것은 “의문의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덧붙일 필요가 없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이라는 개념도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이라는 뜻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의문사”란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 죽음의 정황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 2조 1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기 때문에 비록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문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다시 말하면 “민주화운동”이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의문사의 진상규명 및 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위원회는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들 중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인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 된다(법 제5조).

위원은 당연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법 제5조 제5항,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법 제7조) 2명의 상임위원은 각각 두 개의 조사과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외에(시행령 제4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직무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법은 위원이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조사활동을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진정을 접수하는데(법 제18조 제2항) 진정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다만,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호의 “의문사”에 대한 긴 정의규정은 법 1조의 목적규정에 들어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라는 구절을 더 명확하게 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의 핵심을 이루는 정의규정이 이처럼 동어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문제의식이 충분히 정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¹⁵⁾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1항) 그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조사결과 그 사건이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법 제24조).¹⁶⁾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원회의 조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첫째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셋째는 보고서의 작성과 공표이다.

첫째, 이 법은 외형상 의문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법 제25조 제1항),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그 이전에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각하 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결정을 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법 제31조). 또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2조).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15) 이 법에 의한 “의문사”란 결국 민주화운동을 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공권력이 개입하여 살해했다는 의심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미 그 자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라는 구절은 불필요하다. 이미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중대”한 사건이 있고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직권조사에 관한 이 조항은 법의 시행 후 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달을 허송하였고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의 제출기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 기한까지 접수하지 못한 의문사 사건이 알려질 경우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16) 법 제24조 제1호는 기각사유로 “사실이 아닌 경우”를 별도의 기각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제2호의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제3호 역시 이 법의 논리적 체계와는 맞지 않는데 “사실확인, 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의문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24조의 기각사유는 제2호의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나면 충분하다.

한다(법 제33조).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가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라고 인정하면 유가족은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즉 1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하여야 한다.¹⁷⁾ 이 보고서에는 의문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법 30조 제1, 2항).¹⁸⁾

3. 위원회의 조사권

위원회가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인과 피진정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그리고 실지조사 등이 있다(법 제22조1 내지 제6항).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22조8 내지 제14항).

위원과 직원, 감정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는 형사처벌하며

17) 이 법 조항의 문리적인 뜻은 위원회가 개별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할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우 이상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고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여(시행령 제23조 제1, 2항) 법 조문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다.

18)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고서에 “1. 의문사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 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34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그리고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법 제37조).

한편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증거나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의 신상공개금지, 신변보호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자료를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III. 의문사법의 문제점

1. 기초적 문제 : 일관성과 완결성 부족

보기에 따라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법의 각 조항들이 일관된 논리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 않아 서로 모순, 충돌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미 법의 시행에 어려움과 혼란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염려가 크다는 점이다.

(1)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이 서로 달라 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 법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5항), 실제로 위원회는 그보다 이전에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의문사에 대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고(법 제18조 제2항),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1차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므로(법 제23조) 조사의 마지막 시한은 2001년 10월말이 되며 조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그 시한은 2001년 11월말이 된다. 시행령에 의하면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

월까지 존속하므로 (시행령 제27조) “위원회의 활동종료”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등(법 제32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활동종료” 시점에 관하여 첫째, 보고서 제출 시점, 둘째, 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 셋째, 재정신청 절차의 종료시점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모순과 혼동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 예컨대, 조사완료 후 위원회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건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은 2001년 11월말에 끝나고 그로부터 3월 후인 2002년 2월말에 사무국도 해산되게 될 것이다.¹⁹⁾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는 2002년 10월까지 할 일없이 계속된다. 위원회가 조사종료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그에 대해 검찰이 위원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모두 기소하여 위원회가 더 할 일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또는 그에 대한 위원회의 재정신청 절차가 위원들의 임기만료까지 완결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흐지부지되거나 새로이 2년의 임기를 가진 위원들을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법률해석으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²⁰⁾

(2) 처벌규정의 모순

처벌규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19) 다만, 법 제21조 제2항의 직권조사 조항에 따라 2001년 1월 이후 위원회가 새로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하면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20) 내가 보기에는 의문사 사건 별로 6개월, 그리고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을 허용하여 최대한 9개월에 그치는 조사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의문사위원회의 취약한 인적·물적 자원과 의문사 조사를 둘러싼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이 기간은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한지,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면 될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전체적으로 정한 다음 개별사건의 조사기한이나 일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것은 의문사 사건의 증인 또는 범죄자가 진실을 밝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 역시 정보나 자료제공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형벌규정에서는 위원, 직원 및 감정인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등에 대한 처벌만 정하고 있을 뿐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폭행, 협박, 강요 혹은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데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게 하면서(법 제37조 제2호)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허점이다. 한편, “위계로써 …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법 제34조 제3호), 이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는 허위의 자료와 물건 제출, 실지조사 거부 또는 방해, 제3자를 이용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는 것(법 제37조의2 내지 제4호)도 어떤 기준에 의한 분류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게 하면서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법해석상 과태료 부과주체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해 보이니²¹⁾ 부과 및 이의, 그리고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아 그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3) 구제조치의 문제

조사결과 이루어지는 구제조치의 경우에도 민주화보상법과 이 법 사이에 미묘한 범주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첫째 범주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여(보상법 제2조 제2호 가), 의문사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제조치로서 보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법 제26조) 분명히 더 좁은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그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의문사위원회의 보상요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유가족은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직접 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두 법 사이에 서로 다르게 범주를 설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²²⁾

21) 김형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 교육자료.

(4) 위원의 자격 문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의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위원의 자격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제한하였다(법 제5조 제1항).

가장 큰 결함은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와 같은 일반적인 범주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심각한 과거 인권유린과 그 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달리 법조계나 관련 학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하여 민주화와 인권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검토되고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사위원회 위원을 오로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도 안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만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 의견과 혁신성을 가지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의 폭을 좁히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법 조항 자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이다. 예컨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라는 기준과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라는 기준은 일관성을 갖지 않고 있다. 대체로 다른 법률에서 실무 법조인의 자격은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와 같은 급으로 인정하여 자격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자격은 모두 실무 법조인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²³⁾ 이는 우리 사회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비추어 대체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법조인이 되는 과정과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가 되는 과정 정도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실무법조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면서,

22) 더 중요하게는 민주화보상법이 그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과거체제에 대한 성격규정과 그 개혁문제를 접어 둔 채 결국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구제조치없이 금전적 보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 점을 포함한 민주화보상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23)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대신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역시 의문사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 가운데 위원으로 충원될 수 있는 인물의 폭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모두가 알다시피 의문사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겪은 극도의 어려움으로 드러난 바 있고, 그 결과 위원회의 전체적인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의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하여 보완해야겠지만 위원들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위원들 스스로는 물론 의문사위원회의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조사를 위한 적절한 기능과 권한

(1) “의문사 사건”과 조사를 둘러싼 상황 인식

의문사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제2조)을 굳이 인용할 것도 없이 의문사위원회의 임무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이런 문제점은 결국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장면을 상징하는 “의문사”사건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법의 제정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의문사” 사건들은 대체로 “죽음에 이를 하등의 이유가 없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죽음에 안기부,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의 특수정보 수사기관들이 개입하였다는 정황 또는 심증이 있는 사건들로, 그 본질은 “국가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건 하지 않건 간에 법의 제정을 통하여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는 그 죽음들이 “국가테러리즘”에 의한 조직적 개입에 의하였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반 범죄와 달리 국가테러리즘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제도적 권한과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24) 김학철, ‘의문사와 인권문제’, 21세기의 인권 II, 한길사 (한국인권재단 편, 2000. 10.), 1097-1100쪽.

안된다.

더구나 이 법에서 말하는 “의문사”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어려움은 그 차원을 넘어선다. 이 사건들은 거의 모두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있다는 강력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심지어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치면서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 은폐”²⁵⁾ 사건들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식기록에 따라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인이 밝혀진” 사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유가족들과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기초하여 그 당시의 국가기관들이 “밝혀낸” 사인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²⁶⁾ 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기관의 조사나 수사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인을 뒤집어엎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문사 법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사인의 “위장·은폐”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인멸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시 의문사 자체는 물론 그 진상의 “위장·은폐”에 관여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제도적 개혁이나 인적 청산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청산을 시도한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권력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제도적, 사회적 권력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강력하게 저항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과 결과를 왜곡시키려 시도한다는 것이 경험에 의하여 증명된 바 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의문사위원회에 맡겨진 과제이다.

(2) 의문사위원회의 애매한 기능

의문사법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기능과 권한, 자원²⁶⁾을 의문사위원회에 주고 있는

25) 김학철, 앞의 글, 1103쪽.

26) 의문사위원회의 인적·물적 지원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정한 기준 외에 정확한 자료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법 제11조 제2항이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하면서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가기관이 불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법률에 명시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런 일반론을 의문사법에 굳이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의문사위원회를 만들면서도 마땅치 않아 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속내를 드러내 주는 듯한 생각이 듈다.

가?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제일 큰 문제는 의문사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설치된 의문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완결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시도한다. 그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정에 대하여 의문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은 국가적인 과정에서 볼 때 하나의 잠정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을 뿐 검찰의 수사, 기소 또는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 혹은 보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의문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결국 “의문사의 진상”에 대한 국가적 판단권은, 이 법의 제정주체들이 그 의문사들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 맡겨져 있다.

첫째,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²⁷⁾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문사위원회는 사건을 “고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이렇게 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게 되며 불기소할 경우 의문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2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맡겨지게 된다.

둘째,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데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

27)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경우에는 15년,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2항에 의한 고문치사죄의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문하다가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특수 증거 날조·인멸로 보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다. 1986년 경기도 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이른바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충열, 여영학 등 피해자들은 2000년 1월 이근안 등을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범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법 제31조 제2항)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상관없이 조사결과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²⁸⁾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검사는 기소할 방법이 없으므로²⁹⁾ 불기소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불기소결정에서 검사가 실체판단을 통해 의문사가 아니라고 결정할 경우 의문사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으므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사건의 진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검사나 군 검찰관에게 위임되게 된다.³⁰⁾

한편 의문사 대상자의 유가족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해서도 의문사위원회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뿐이고 이에 대한 판단권은 보상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문사 사건의 진상에 관한 국가적 판단권이 의문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의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조차 그 진상에 대한 판단권을 위원회에 주지 않고 검사에게 부여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

28) 김형태, 앞의 글.

29) 의문사법은 고문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결정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법 제31조 제1항은 결국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밝혀진다고 해도 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이 존속하는 동안 의문사 등의 정치적 범죄에 대한 국가소추권 행사에 법률상 혹은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나는 그것이 국가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현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보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찬가지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정지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더욱 치밀한 사실적, 법률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30) 검사나 군 검찰관이 실체판단을 통해 혐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 이에 불복하는 가해혐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다가, 검사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뒤집어 다른 결론을 낸다면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는 더욱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침해의 진실이 일면적이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는 물론 때로 피해자 상호간에, 그리고 가해자 상호간에도 다를 수 있다는 점,³¹⁾ 그리고 준사법적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증거판단의 기준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사법적 수사절차와 증거판단의 기준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³²⁾을 고려하면 의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진상과 검사에 의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3) 의문사위원회의 취약한 조사권

위원회의 조사권 역시 극히 제한되어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등 협조요청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력이 없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사방법으로 제한되어 있다.³³⁾ 특히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한 것이 밝혀져도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일단 부인과 은폐를 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 유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가져야 할 권한의 국제적 수준에 극히 미달하고 있다.³⁴⁾ 위원회에 자료나 증거를

31) Mary Burton, 'Looking back, moving forward - revisiting conflicts, striving towards peace',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Dealing with the Past, Reconciliation Processes and Peace-Building' 참조.

32) Graeme Simpson, A Brief Evaluation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ome lessons for societies in transition, Centre for the Study of Violence and Reconciliation, 1998; 김형태, 앞의 글 참조.

33) 위원회의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실지조사를 거부, 기피한 경우,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만으로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34)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항상시키기 위한 원칙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제7조는 과거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Extrajudicial Commission of Inquiry)의 근거법은 위원회가 법집행당국의 협조를 얻어 증인신문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조사에 필요한 어떠한 장소든지

제출하거나 하려는 관련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나 수단도 부실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증거의 확보를 위한 조치 역시 구체적이지 아니하다. 관련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예전대 법원의 명령을 얻어 이를 관철할 수단도 없다.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불확실한 조항(법 제33조)은 의문사위원회의 예측가능한 판단 대신 불확실한 법원의 판단에 당사자의 운명을 맡김으로써 범죄자의 자수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진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단지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만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앞으로 위원회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시행령 제22조).

(4) 의문사위원회의 책임면제

검증하며 관련된 문서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하며, 조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절차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어떠한 사람이든지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Revised final report prepared by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decision 1996/119, UN Doc. E/CN.4/Sub.2/1997/20/Rev.1, 2 October 1997, Annex II.* 한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of 20 December 1993, annex)의 해설서는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진정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답변하게 할 권한; ② 적절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free access)할 권한; ③ 문서 또는 구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권한; ④ 현장조사권; ⑤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권; ⑥ 증언을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소추를 면제할 권한; ⑦ 인권침해에 관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조사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한; ⑧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한; ⑨ 선서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게 할 권한; 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권한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그밖에도 인권기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일반조항 또는 우산조항(umbrella clause)을 두는 것이 인권기구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1995, 258-259* 항 참조. 그밖에도 Michael P. Scharf, 'The Case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Truth Commiss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 7, 375쪽 이하도 과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위원회와 위원의 특권과 면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공표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위원회는 물론 위원과 직원 등이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의문사법은 위원회에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다음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상을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법 제30조) 공권력의 개입사실을 밝힐 경우³⁶⁾ 그 내용은 해당 기관과 그 당사자들에게 명예훼손이 될 것이 명백하다. 이때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만일 진실과 다르다고 할 경우 위원회나 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매우 약하여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고 의문사 사건의 진실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이 의문사위원회가 아닌 검찰과 법원에 넘어가 있어 위원회의 판단이 사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공표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민·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위원회와 위원들의 독립성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책임만 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3. 과거청산의 방향과 원칙에 관한 문제의식

(1) 왜 “의문사”인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的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

35) 앞서 본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원칙 제6조 (c)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UN Doc. E/CN.4/Sub.2/1997/20/Rev.1, 2 October 1997, Annex II 참조.

36) 법 제30조 제3항은 위원회가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위원회로서는 의문사에 관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 당사자나 관련 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재판절차가 아닌 진상규명위원회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가, 공개할 수 있다면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고 과거청산을 한 국가들의 경험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정만료기간인 12월 31일까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은 44건 정도라고 한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과거청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법³⁷⁾이 그 규명대상으로 단지 의문사, 그것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권위주의 정권은 온갖 유형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 모든 밝혀지지 않은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는 과거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 어떤 문제를 덮고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가를 또한 선택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자체 매우 미묘한 정치적·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 및 미래지향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첫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을 죽음에 대하여는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는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해석하여 그 범주에 포함되는 “의문의 죽음”的 범위를 넓힐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³⁸⁾ 이 법의 주체들이 반드시 고민하여 대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을 규명함으로써 그 당사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37)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들은 특정 시기의 특정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문사법은 비록 많은 한계가 있지만 특정 시기나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범주에 따라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법들에 비하여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8) 김형태, 앞의 글은 “민주화운동”的 범주를 최대한 넓히기 위한 이론적 시도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화운동”的 범위를 그보다 더 넓히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건, 그리고 현실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건 없건 간에 논리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의문사의 범주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 것이다.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미래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대상선정은 논리적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범주로 선택되어야 하며, 그 선택 역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의 진상만을 규명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의문사의 진상은 규명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로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침의 존엄성을 가지며 각 개인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것,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을 토대로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권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그 생명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도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의문사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덮어두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의 진상만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과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분명히 제기되고 대답이 되었어야 하는 이 의문에 대하여 아무런 토론도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명백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과거청산을 통하여 민주적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는 주체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고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³⁹⁾

둘째,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침해들 가운데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의문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문사 유족들의 농성이 이 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적인 과제로서 입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 과거에 어떠한 인권유린이 저질러졌는지, 그 중에서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권유린은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대로 묻어둘 것인지, 다음 단계의 진상규명 작업을 시도할

39) 이와 별개로 드물기는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실종”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행방과 사망여부가 불분명한 실종사건이야 말로 의문사위원회와 같은 준사법적 진상조사위원회(Extrajudicial Commission of Inquiry)가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저지른 인권침해 가운데 체제유지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의문사가 바로 그 유형에 해당한다면, 의문사의 진상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1980년대에 한국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통제기구, 즉 체제의 안전을 위한 전략으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평가⁴⁰⁾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기간에 비하여 문제되는 의문사 사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⁴¹⁾을 고려하면,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한 기본적인 인권유린의 형태는 의문사가 아니라 불법체포와 감금에서 비롯된 고문과 투옥이며 의문사는 그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의문사 자체의 진상규명이 가지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체제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벌어진 소수의 인권유린만을 규명하고 체제유지의 본질적인 수단이 된,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유린의 양상과 체제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성격⁴²⁾은 물론 그 체제가 일반인들에게 미친 광범위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⁴³⁾ 과거청산의 본래적 의미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⁴⁴⁾ 권위주의 통치의 인권유린

40) Amnesty International, *Torture in the Eighties*, 1984, 4-6, 191-194쪽 참조.

41)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1976년부터 1983년 사이에 약 30,000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실종자조사위원회(CONADEP)은 9,000건 정도의 실종사건을 조사하였다. 칠레의 실종자조사위원회는 2,920건의 실종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차드는 약 40,000건, 스라랑카는 약 5,000건 정도의 실종사건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42) Brandon Hamber, 'How should we Remember? Issues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commissions and structures for dealing with the past',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Dealing with the Past, Reconciliation Processes and Peace-Building", Belfast, Northern Ireland, 9 June 1998 참조.

43) Ana Cecilia Vergara & Jorge Vergara Estevez, 'Justice, impunity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 challenge for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1994, 273쪽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전개하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약점이 있는 듯이 느끼게 하며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 같은 심리상태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도 불안감(sense of uncertainty)과 위급한 느낌(sense of emergency)이 만연되게 된다. 반면 체제의 옹호자들은 공산주의를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허황된 인식을 통해 혼란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fear of chaos and revenge)의

문제가 정권을 장악한 소수의 범죄자와 그들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당한 소수의 또 다른 “범죄자”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 위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이렇게 되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문사사건들의 피해자들이 그들의 정당성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오히려 소외, 고립되는 양상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같은 생명권의 침해 가운데 보기에 따라서는 범죄의 양상과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문제가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법의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고민과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의 범주 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고,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의 소외감과 불신을 고조시켜 정치적 투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의문사의 범주는 민주화보상법(제2조 제1호)에 정한 “민주화운동”의 개념정의에 따라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에 국한된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데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의문사의 범위를 이처럼 1969년 8

증세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 인권침해 조사가 이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정신병을 유발하는 기제(psychosis-inducing mechanisms)”를 청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4) 예컨대, 우루과이의 경우 1985년 설치된 실종자조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ssion on the Situation of Disappeared People and its Causes)는 164건의 실종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우루과이의 군사정권은 아르헨티나나 칠레와 달리 대규모의 조직적인 강제실종보다는 수천명의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과 불법투옥에 의지한 체제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고 실종사건만 조사한 우루과이의 실종자조사위원회는 과거청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의식(potitical exercise)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Jose Zalagquette, 'Confro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mer Governments: Principles Applicable and Political Constraints', State Crimes - Punishment or Pardon, The Justice and Society Program of the Aspen Institute, 1989, 58-59쪽; Priscilla B. Hayner, 'Fifteen Truth Commissions - 1974 to 1994: A Comparative Study',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1994, 616쪽 참조.

45) Ana Cecilia Vergara & Jorge Vergara Estevez, 앞의 글에 의하면 우루과이 뿐 아니라 실종자 조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보다 더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문과 불법 감금, 추방, 정치적 박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미 제국에 전제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월 7일 이후의 것으로 한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1969년 8월 7일”은 박정희 정권이 삼선개헌을 발의한 날로서, 이를 계기로 하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그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1969년 8월 7일 이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통치체제였는가,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통치체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만일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왜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가?

(2) 법의 목적 :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이 법은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물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과거청산의 목적으로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제도개혁을 촉진하며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서 정의를 회복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촉진하는 것을 들고 있다.⁴⁶⁾ 그러나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바람직한 목표들이 때로는 서로간에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의 선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문사법에서 말하는 “국민화합”과 “민주발전”的 뜻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的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 피해자와 사회의 “진실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⁴⁷⁾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46) Brandon Hamber, 앞의 글 참조.

47) 앞에서 본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 (Question of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Revised final report prepared by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decision 1996/119, UN Doc. E/CN.4/Sub.2/1997/20/Rev.1, 2 October 1997, Annex II) 제1조는 “진실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the 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그 환경, 그리고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통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양도할 수 없는 알 권리를 가진다. 진실에 대한 권리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행사는 장래 이러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 제2조는 압제의 역사를 기억할 국가의 의무를, 제3조는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제4조는 알 권

과거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⁴⁸⁾ “민주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의문사법은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뿐 아니라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⁴⁹⁾ 의문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미래의 제도개혁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화합”的 경우에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의문사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화합을 말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적 세력 사이의 화합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의미인지 이 법의 규정들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의문사 사건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그 진상을 밝힌 다음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하거나 처벌에 준하는 공적인 판단을 내려 단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합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이 법이 “의문사”를 개인적인 범죄 이전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는 사건 혹은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당사자의 차원을 뛰어넘는 집단 혹은 세력 사이의 “화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의 체제와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그리고 후속조치의 내용과 이행방식이 전혀 달라졌어야 할 것이다.

IV. 맷는 말

지금까지 의문사법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비사법적인 조사위원회(extrajudicial commissions of inquiry)의 설치를 요구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48) 이런 관점에 관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활동을 평가한 것으로는 Aletta J. Norval, 'Memory, Identity and the (Im)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The Work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outh Africa', Constellations vol. 5, No. 2, 1998, 250-265쪽 참조.

49)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문사 사건의 진상에 대한 최종적인 국가적 판단권이 검찰과 법원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과 의문사 위원회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 전자는 위원회를 실무차원의 기구로 격하시키는 반면, 후자는 위원회에 미래지향적인 과거청산의 제도로 격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은 우선 그 규정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거나 법의 시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내면적인 일관성과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며, 이 문제만으로도 조만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문사위원회는 법이 내건 목적을 달성할 만한 제도적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이는 무엇보다도 “의문사” 사건의 특성과 그 조사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과거청산 작업으로 시도된 의문사법의 제정은 그 조사대상 선정의 근거와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이 내건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과거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고민이 부족한 가운데 의문사 유가족들의 생명을 건 투쟁에 밀려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법을 만든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법 자체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개정은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이 내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권한,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의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맡겨 놓은 다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답변을 내리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과거 인권침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의문사” 문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의 과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토론한 다음에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⁰⁾

5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77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제안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과거인권침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국가권력이 생명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국가에 권고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대위는 과거청산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문제와 함께 정부와 국회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의문사”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당위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우리 앞에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쓸면서 전개되어온 민주화를 향한 전환의 경험들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들이 씨름하면서 발전시켜 온 과제들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문자 그대로 야수와도 같은 국가권력을 순화하여 시민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요청을 실현함으로써 민주화 이행을 촉진하는 과제의 핵심에 의문사 진상규명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의문사위원회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상처를 준 “의문사” 사건의 진상에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인권단체들과 학계, 그리고 사회 일반에 과거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고민과 토론이 활성화되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국가를 건설(giving the state a human face)”⁵¹⁾ 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열쇠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의문사법의 문제점들이 그러한 고민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과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정책적 결정을 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공대위의 법안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자료집, 2000.11., 5-38쪽 참조.

51) Wilhelm Verwoerd, ‘Justice after Apartheid? Reflections on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aper delivered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thics and Development, “Globalization, self-determination and justice in development”, Madras, India, 2-9 January 199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선언

유엔 총회

A/RES/47/133

92차 전체회의

1992년 12월 18일

총회는,

유엔헌장과 다른 국제 규약들에서 선언된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인류 구성원들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승인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헌장 특히 제55조에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를 증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심하고,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다양한 부서 또는 수준에서 공무원 또는 정부에 대신하거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조직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에 의해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절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이 수반되는 사람들의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의미에서의 강제실종이 끊임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깊이 염려하며,

강제실종은 법치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전념하는 어느 사회의 가장 깊은 가치를 훼손하고, 그와 같은 행동의 제도적 관행은 인간에 대한 범죄의 속성을 떤다는 것을 고려하고,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세계 여러 부분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관심과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실종에 의해 야기된 번민과 슬픔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에 대해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을 이끌 수 있는 과도한 행위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과 보안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담은 총회 결정 33/173 1978. 12. 20.을 상기하고,

또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과 이에 따른 1977년 부가 의정서에 의해 무력 분쟁의 희생자들에게 제공되어진 보호를 상기하고,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및 안전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법앞에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들을 보호하는 유엔인권 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특별히 고려하고,

또한 당사국들이 고문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고,

법집행공무원들의 행동 강령과 법집행공무원들의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및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기본 원칙들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원칙들을 명심하고,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9일의 경정 43/173에 부가된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기구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 1989/65 1989. 5. 24.에 부가되어 공포되고, 총회 결정 44/162 1989. 12. 15.에서 확인된 초법적이고 자의적이고 악식의 집행의 효과적인 방지와 조사에 대한 원칙들에 엄격히 순응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실종을 구성하는 행위는 앞에서 언급된 국제 규범들에서 발견되는 금지의 위반을 구성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강제실종의 행위를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들의 작위를 벌하고 방지하도록 고안된 기준을 공포하는 규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1.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현 선언을 모든 국가에 대한 원칙의 실체로서 선언하고,

2. 선언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존중되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1조

1. 어떠한 강제실종 행위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다. 그것은 유엔헌장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유엔헌장에서 선언되고, 이러한 영역에서 국제 규약으로 재확인되고 발전된 인권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극악한 침해로 비난받게 된다.

2. 어떠한 강제실종 행위도 그 사람들을 법의 보호밖에 놓게 되고,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국제법 보장의 원칙 예컨대 법 앞에 인격체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와 안전의 권리, 고문과 그밖의 잔악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구성한다.

제2조

1. 어떤 국가도 강제실종을 행하거나 허락하거나 관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들은 국내적, 지역적 수준에서 또한 유엔과 협력하여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종식시키는데 기여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제3조

각 국가는 그 관할아래 있는 영토 내에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1. 강제실종의 모든 행위는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응분의 형벌로서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되어야 한다.

2. 강제실종에 참여하였으나, 향후 희생자를 생존하게 만들거나, 강제실종의 사안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는, 국내입법에 있어서 죄를 감경해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제5조

강제실종은 위와 같은 형벌이 적용되어지는 것에 더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가 국제적 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그와 같은 실종을 조직하고, 묵인하고, 관용한 강제실종 수행자, 국가, 혹은 국가관청들을 민사법상 책임 아래에 두게 된다.

제6조

1. 그 어떠한 공적인 권한, 문민, 군인, 혹은 다른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의 명령이나 지시도 강제실종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그와 같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거부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2 각 국가는 그 어떠한 강제실종도 이를 지시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추기는 명령이나 지시를 금하도록 해야한다.

3. 법집행공무원의 훈련에 있어 이 조항 1항과 2항의 규정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7조

전쟁의 위협, 전쟁상태, 국내적 정치불안 혹은 다른 공공위험 등 그 어떤 환경도 강제실종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제8조

1. 어떤 국가도 강제실종의 위험에 처해질 염려가 있다고 믿어질 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귀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와 같은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소관관청은 인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극악한 혹은 대량 침해의 상존하는 패턴이 해당국가 내에 존재하는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고려를 해야 한다.

제9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행방 및 건강상태를 결정하고/혹은 자유를 박탈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수행한 공무원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전7조에서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아래에서 강제실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2. 그와 같은 절차에 있어 국내의 소관관청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질 만한 근거가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내 법규에 의해 혹은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 법규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그 어떠한 다른 소관관청도 그와 같은 장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어떠한 사람도 공적으로 인정된 구금장소에 가둬져야 하고, 국내법과 일치되게 구금 후 바로 사법기관에 데려가져야 한다.
2. 그와 같은 사람의 이동을 포함한 구금, 구금장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관련 사람들에 의한 반대의사가 표명되지 않는 한 즉각 가족들, 변호사, 법률적 이해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업무 헤이트한 명부가 모든 구금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가는 비슷한 범주의 명부를 비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명부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른 구금된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하여 찾는, 앞의 절차에서 언급된 사람들, 사법 혹은 다른 독립된 국가관청과 관련국의 법률로, 혹은 관련국이 체약국인 국제 법규에 의해 해당관청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소관관청에 제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석방되었고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육체적 완전과 능력이 확실하게 되는 조건하에서 석방되었다는 믿을만한 확인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석방되어져야 한다.

제12조

1. 각 국가는 자유의 박탈을 명할 권리 있는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법에 규정들을 정하여, 어떤 조건하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지 정하고, 법적 정당성 없이 어떠한 구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관헌들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각 국가는 체포, 구금, 구속, 송치 그리고 행형을 책임지는 법집행공무원들과 강제력과 무기를 사용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공무원들의 명확한 명령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엄격한 감독을 또한 확보해야 한다.

제13조

1. 각 국가는 인식 혹은 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강제실종에 처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고, 그 청원은 관청에 의해 신속히 완전하고, 공정하게 조사될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실종이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공식적인 호소가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조사를 맡은 기관에 사안을 신속히 넘겨야 한다. 조사를 생략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2. 각 국가는 소관관청이 증인의 출석, 관련서류의 제출을 강제하고 사건 현장을 즉각 방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3. 원고, 변호사, 증인, 조사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사 관련자들은 부당 처우나 협박,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4. 그와 같은 조사의 경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되는 수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그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져야 한다.
5. 청원을 제기한 경우 또는 그 조사 절차 동안에 그 어떠한 부당 처우, 협박, 보복이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방해도 처벌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6. 조사는 전술한 절차에 따라, 강제실종의 희생자의 운명이 밝혀질 때까지 행해져야 한다.

제14조

- 특정 국가내에서 강제실종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주장되는 그 어떠한 사람도 공적조사에 의해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국제법규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국가에 인도되지 않는

한 기소와 재판을 목적으로 문민 관리에게 송치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그 관할 아래서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강제실종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합법적이고 적당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제15조

어떤 사람이 전술한 제4조 1항에 언급된 극도의 심각성을 가진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안은 동기와 상관없이, 국가는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이 이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만 한다.

제16조

1. 제4조 1항에 언급된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는 어떠한 사람도 제13조에 언급된 조사기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들은 특히 군사법정과 같은 특별 법원이 아닌 각 국가의 소관 보통법정에서 심리되어져야 한다.
3. 그와 같은 법정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포함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권, 면책특권, 특별사면도 받아들여져서 아니 된다.
4. 그와 같은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조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인권선언과 다른 효력 있는 국제규약들의 상응하는 조항에 따라 정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

1. 강제실종을 구성하는 행위는 범법자가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과 행방을 숨기고 이러한 사실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들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강제실종과 관련된 시효들은 구제들이 다시 마련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3. 강제실종의 행위에 관련된 존재하고 있는 시효는 실체적이고, 범행의 극도의 중대성과 상응해야 한다.

제18조

1. 전 4조 1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은 형사 절차나 제재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어떤 특별 사면법이나 비슷한 조치의 혜택을 줄 수 없다.
2. 관용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강제실종이 가지는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

강제실종의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배상을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들을 포함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강제실종의 결과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의 피부양자들이 보상받을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1. 국가들은 강제 실종된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혹은 모가 강제 실종된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유괴를 방지하고 억제하여야 하고, 그러한 아이들을 찾고 확인하고, 아이들이 가정에 되돌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의 절차와 관련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아이들의 입양을 재고하고 특히 강제실종에서 기인한 입양을 취소하는 것을 승인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같은 입양은 그러나, 재검토할 시기에 애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지속할 수 있다.
3. 강제 실종된 부모의 아이들 혹은 모가 강제 실종된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유괴,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변조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될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4.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들은 상호 다자간 조약을 이끌어야 한다.

제21조

현 선언의 규정들은 유엔인권선언 혹은 다른 국제협약에서 선언된 규정들에 이미 정해진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170호 신규제정 2000. 1. 15.]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자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혐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혐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자격사정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①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 (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0조 (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1조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

⑩ 제9항의 동행 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 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 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 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위원·증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 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 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

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업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

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5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하부조직)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

제7조 (행정과) ① 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국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진정 등 민원의 접수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9조 (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 (조사3과장) ① 조사3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1조 (특별조사과) ① 특별조사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의문사한 자와 이는 자 등으로서 의문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제15조 (진정의 방식 등) ①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행정질

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진정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들의 진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 (진정의 이송)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결정 등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나 출석 요구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관계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0조 (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증인·참고인이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문사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
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 국제인권관련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2급 1, 3급 또는 4급 3,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